

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
발 의 자 : 김혜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달호, 김인제, 김제리,  
박상구, 송아량, 양민규,  
이병도, 최 선, 황규복  
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‘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음.
- 서울시 또한 2015년 ‘병역명문가 조례’를 제정·시행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음.
- 최근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과학관, 주차장 등의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,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과 대우 등의 혜택 방안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임.
- 이에 예우대상자 이외에도 예우대상자 가족, 타 지역의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(2020년 말 기준, 전국 병역명문가 6,395가문)해,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.
- 또한, 조례의 근거 규정인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 제1호, 제3호).
- 나.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예우대상자 가족과 타 시·도의 병역명문가 까지 확대하고, 시설물 감면료에 주차료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5조제 1항 후단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”을 “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”로, “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”을 “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모”를 “부모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예우대상자에 대하여”를 “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”로, “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”를 “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·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예우 및 홍보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우대)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-----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부모----- -----.</p> <p>제4조(예우 및 홍보) ① ----- ---- 범위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우대) ① -----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----- ----- -----</p>

물의 사용료 · 입장료 · 수강료  
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

<후단 신설>

② (생략)

--- 사용료 · 입장료 · 수강료 ·  
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

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·  
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 
해당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문서번호	2021052700000008
------	------------------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기획경제위원회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
접수일 : 2021. 05. 27.	내용문의 : 02-2180-7954
회신일 : 2021. 05. 28.	

##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우대)제1항을 개정함에 따라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서울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안 제5조제1항 개정에 따라 우대 대상자를 예우대상자의 가족 및 타 시·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하고, 시설물 감면료에 주차료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서울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별 감면 규정이 상이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\* 2020년 기준, 우리나라 전체 병역명문가는 1,017가문, 5,222명(병무청 자료)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